

《研究基礎資料：翻譯》90-09

蘇聯의 聯邦 및 共和國의 權限에 관한 法律

1990. 12.

韓國法制研究院

蘇聯의 聯邦 및 共和國의 權限에 관한 法律

(1990年 4月 26日 制定)

第1條 ① 蘇聯은 主權社會主義聯邦國家이다. 聯邦은 聯邦構成員이 공동으로 聯邦의 管轄로 지정한 權限을 가진다.

② 聯邦構成共和國은 蘇聯내에서 民族의 自決權과 平等權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된 主權소비에트社會國家이다. 聯邦構成共和國은 聯邦의 管轄로 이양한 權限 이외에는 公화국영토상에서 모든 國家權限을 소유한다.

③ 自治共和國은 聯邦(蘇聯)의 構成員인 소비에트 社會主義國家이다.

④ 自治共和國과 自治團體는 民族의 自決權에 기초한 聯邦構成共和國의 일부이며, 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管轄로 이양한 權限 이외에는 自治共和國의 영토상에서 모든 國家權限을 가진다.

⑤ 自治共和國과 自治團體 및 이들로 構成된 聯邦構成共和國간의 關係는 蘇聯憲法,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憲法, 그리고 이 法의 체계내에서 協定과 條約에 의하여 결정된다.

第2條 ① 각 聯邦構成共和國은 聯邦으로부터의 제한없는 脫退權을 가진다.

② 聯邦構成共和國의 聯邦으로부터의 脫退는 國民投票(人民投票)를 통한 聯邦構成共和國 國民의 자유로운 意思表現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聯邦構成共和國의 聯邦으로부터의 脫退에 관한 問題의 解決 節次는 聯邦法令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第3條 ①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또는 自治團體의 領土는 동의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

② 聯邦構成共和國간의 境界는 相互協定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聯邦에 의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 聯邦構成共和國間, 聯邦構成共和國과 自治共和國 또는 自治團體간의 領土紛爭, 相互協定에 체결되지 않은 事項에 관한 紛爭은 相互同意下에 蘇聯最高國家人民會議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

第4條 ① 聯邦構成共和國와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地域은 독립적으로 生産·經濟施設의 配置問題를 처리하며, 領土內의 모든 人民의 이익을 고려하여 領土상의 종합적인 經濟的·社會的·文化的 發展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勞動資源의 이용, 環境保護의 問題에 關하여 共和國은 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立法行爲에 의하여 또는 他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立法行爲에 의하여 聯邦 또는 他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에 속한 企業, 施設, 團體의 活動條件을 정한다.

③ 自治共和國의 領土上에서의 經濟的·社會的·文化的 建設分野에 대하여 自治共和國은 상호동의하에 聯邦構成共和國의 管轄로 이양한 것 이외에는 聯邦構成共和國와 동일한 權利를 가진다.

④ 聯邦構成共和國와 自治共和國 및 自治團體는 相互間의 經濟的·社會的·文化的 結社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相互間 및 多者間의 協定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聯邦 또는 他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自治團體의 利益과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第5條 ① 聯邦構成共和國은 外國과의 修交, 條約의 締結, 外交的·領事的 使節의 交換, 對外通商 및 國際組織의 活動에 참여할 權利를 가진다.

② 聯邦構成共和國에 의한 前項上의 權利의 行使는 聯邦法令 또는 聯邦의 國際協約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6條 다음 各號의 사항은 國家權限과 行政의 最高기관인 聯邦의 배타적 管轄에 속한다.

1. 蘇聯憲法의 採擇, 蘇聯憲法의 改正, 聯邦管轄에 속한 問題에 대한 人民投票에 의 回附決定의 採擇
2. 蘇聯에서의 새로운 聯邦構成共和國의 承認, 새로운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地域의 構成과 既存 共和國의 地位의 變更에 대한 承認
3. 聯邦 行政機關에 제소한 경우의 聯邦構成共和國間, 聯邦構成共和國와 自治共和國·自治團體間의 紛爭解決
4. 蘇聯國境과 國境規制에 關한 決定
5. 蘇聯國家權力 및 行政機構의 組織과 활동의 規制
6. 聯邦豫算의 編成, 承認 및 執行, 蘇聯國家銀行體系, 單一貨幣體系, 全聯邦租稅·手數料에 關한 규정

7. 國家의 社會的·經濟的 發展을 위한 長期計劃, 모든 聯邦計劃의 作成과 移行
 8. 聯邦에 의한 國家貸付 및 外國에 대한 經濟的 援助의 제공, 外國으로부터 聯邦에 제공된 信用 및 國家貸付에 관한 協定의 체결
 9. 鐵道, 領空, 領海, 幹線輸送管에 의한 수송, 防衛施設, 宇宙研究, 蘇聯의 통일적 에너지체제, 全聯邦의 通信과 情報體系의 管理 및 聯邦法令, 聯邦과 聯邦構成共和國間의 協定에 의하여 全聯邦의 國家財産으로 인정되는 施設의 관리, 생산·저장과 핵분열물질의 利用에 대한 規制
 10. 蘇聯의 對外政策의 決定, 聯邦에 의한 國際條約의 체결, 國際關係에서의 蘇聯의 代表
 11. 平和와 戰爭의 문제, 蘇聯主權의 防禦와 領土保全, 蘇聯國境의 보호, 단일한 關稅地域, 關稅, 關稅率에 기초한 關稅局의 組織을 위한 原則의 制定
 12. 防衛組織, 蘇聯陸軍, 內陸軍, 鐵道維持軍의 管理, 蘇聯國家 安全의 保障
 13. 聯邦法院의 구성, 蘇聯내에서의 檢事의 통일적 지휘체계에 관한 規定
- 第7條 이法 第6條에 규정된 聯邦의 權限은 聯邦構成員의 동의없이는 확대될 수 없다.
- 第8條 다음 各號의 사항은 聯邦과 聯邦構成共和國의 공동관할에서 蘇聯의 最高國家權力 및 行政機構의 관할로 이양된다.
1. 蘇聯市民의 法的地位 및 公共關係를 규율하는 原則의 制定, 蘇聯市民의 居住地와 관계없는 蘇聯市民의 權利와 自由의 보호
 2. 自治共和國과 自治團體 및 國家行政區域單位의 法的地位를 규율하는 一般原則의 制定, 聯邦構成共和國과 自治共和國 및 自治團體의 權限의 劃定, 地方의 自體管理의 一般原則의 決定과 地方經濟의 組織化
 3. 市民, 土地, 山林, 水資源, 鑛物, 刑事, 刑宣告 및 矯導, 財政, 勞動立法, 社會保障, 公共教育, 公共保健, 環境保護, 行政上 違法行爲, 司法制度와 法的 節次에 관한 立法의 制定
 4. 全聯邦市場의 活性化에 기여하는 法原則의 制定과 全 共和國의 利益의 保護
 5. 一般 財政·信用政策과 價格形成原則의 決定
 6. 勞動資源 利用, 賃金 및 產業安全裝置分野에 관한 政策上 一般原則의 制定
 7. 文化, 教育, 科學研究, 科學·技術進步의 감독, 조정, 장려
 8. 公共秩序의 유지와 犯罪退治의 全般的 管理

9. 外國, 國際組織과 聯邦構成共和國의 관계에 관한 一般節次의 마련, 對外經濟活動의 전반적 관리
10. 外國市民과 蘇聯市民權이 없는 者의 法的 地位에 관한 規定
11. 蘇聯憲法遵守에 대한 보장

第9條 ① 聯邦은 聯邦構成共和國과의 協定으로 共和國내에서의 聯邦權限의 行使를 聯邦構成共和國에 이양할 수 있다.

② 聯邦構成共和國은 聯邦과의 協定으로 共和國에 속한 權限을 聯邦의 管轄로 이양할 수 있다.

第10條 聯邦과 聯邦構成共和國의 共同管轄權에 속한 문제가 聯邦法令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聯邦構成共和國은 管轄권에 속한 문제에 관한 立法的 規律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權利를 가진다. 또한 自治共和國과 自治團體의 管轄權에 속한 問題는 自治共和國 및 自治團體의 同意하에 규율된다.

第11條 ① 蘇聯憲法, 聯邦法律, 기타 蘇聯最高國家權力·行政機構의 行爲는 蘇聯全體에 대하여 拘束力을 가진다.

② 聯邦構成共和國 또는 自治共和國의 憲法과 蘇聯憲法이 서로 抵觸되는 경우에는 蘇聯憲法이 우선한다.

③ 聯邦構成共和國과 自治共和國의 法令 및 기타 最高國家權力·行政機構의 行爲와 蘇聯憲法, 聯邦法令, 기타 蘇聯最高國家權力·行政機構의 行爲가 서로 抵觸되는 경우에는 당해 聯邦機關에 의해 行하여진 行爲가 우선한다.

④ 聯邦法令과 기타 聯邦機關의 行爲는 聯邦의 權限範圍內에서 行하여지며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權利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2條 ① 行爲의 合法性과 관련한 聯邦과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最高國家權力·行政機構間의 불일치는 蘇聯憲法과 蘇聯의 憲法監督에 관한 法律에 규정된 節次에 따라 심사된다.

第13條 ① 聯邦構成共和國 또는 自治共和國의 權利가 침해된 경우 聯邦構成共和國 또는 自治共和國의 最高國家權力機構는 聯邦閣僚會議의 決議와 命令에 異議를 제기할 權利를 가진다.

② 懸案에 되는 問題는 蘇聯最高人民會議에 의하여 해결된다.

③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最高國家權力·行政機構는 聯邦長官, 國家委員會, 國家行政廳이 聯邦閣僚會議에의 通知와 함께 聯邦法令이나 聯邦構成共和國

또는 自治共和國의 重要法令을 위반한 경우 當該機關의 聯邦構成共和國 또는 自治共和國 領土上에서의 行爲를 정지시킬 權利를 가진다.

④ 關係聯邦行政官廳의 行爲가 聯邦構成共和國 또는 自治共和國의 最高人民會議에 의해 정지된 경우에 懸案이 되는 문제는 蘇聯最高人民會議에 의하여 처리된다.

⑤ 關係聯邦行政官廳의 行爲가 聯邦構成共和國 또는 自治共和國의 閣僚會議에 의하여 정지된 경우에는 聯邦閣僚會議에 의하여 懸案事項이 해결된다.

〈朴 尙熙 譯〉

〈參考資料〉

- Law on USSR, Republic Powers,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Vol. XLII, No.19(1990)

